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8.(일) 12:00 (2026. 11. 9.(월) 조간)

고용보험 부정수급, 지금 신고하세요!
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

- 고용노동부, 11.9.~12.31. 「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」 운영
- 실업급여 반복수급·해외체류 중 의심사례 특별점검 병행

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**'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'**을 **운영**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,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**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**하기 위해 운영된다. 부정수급 사실을 **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**받을 수 있고, **부정수급을 제보**하면 **신고포상금**을 받을 수 있다.

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,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된다. **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**되며, **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**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·동기·결과 등을 고려하여 **지급제한기간**을 **최대 3분의 1까지 감경**할 수 있다. 다만,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되며,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.

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**부정수급액의 20~30%**를 **신고포상금**으로 지급한다. **실업급여**는 **최대 500만 원**(**사업주 공모 시 5,000만 원**), **모성보호급여**는 **최대 500만 원**, **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**은 **최대 3,000만 원**까지 지급한다.

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및 제보는 **고용24**(work24.go.kr), **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국민신문고** 등 **온라인**으로 할 수 있으며, **지방고용노동관서**에 **방문·우편·팩스·전화**로도 가능하다.

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**'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'**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한다.

주요 점검대상은 **▲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▲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** 등이다.

이번 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. 다만, **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.**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, 재취업활동 여부 등 **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**할 계획이다.

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특별점검을 통해 **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**하여 **고용보험 부정수급**에 대한 **예방·적발**을 **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"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"라며, "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**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,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**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손성길 (044-202-7368)
		담당자	사무관	최은진 (044-202-7350)
담당 부서	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순홍 (044-202-7227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인 (044-202-7229)
담당 부서	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소연 (044-202-7496)
		담당자	사무관	송주현 (044-202-7412)
담당 부서	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	책임자	과 장	박진혁 (044-202-7307)
		담당자	사무관	신진경 (044-202-7311)

참 고 **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FAQ**

1.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

□ 자진신고와 제보는 **온라인**(고용24 홈페이지(work24.go.kr), 국민신문고)이나, **팩스,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** 등 **모두 가능**합니다.

○ **제보**는 **익명**으로도 **가능**하나, **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,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** 및 **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2.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?

□ **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지만,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**하고,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·처분횟수 등 **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**될 수 있습니다.

○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**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** 합니다.

○ **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,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**되어 제재를 받게 되니 **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**입니다.

3.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?

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**실업급여 등 급여**를 지급받으면 **급여 지급이 제한**되며, **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**될 수 있습니다.

○ 또한 **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